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단312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피 고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AC과 피고 사이에 2018. 10.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C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 10. 31. 접수 제259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A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AC은 유사수신행위인 AD회사, (주)AE, (주)AF의 부산지사장으로,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AC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 부산지사를 통해 위 회사들에게 FX마진거래와 AG코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2) AC은 2018. 4. 20. 위 회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603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C은 AH, AI, A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4. 1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투자자들에게 “① AH 회장의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6개월이 지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0달러이다. ② 투자자가 직접 20,000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직접 소개 수익으로 지급하고, 20,000달러 이상 직접 투자한 사람의 투자 유치 금액이 100,000달러에 달하면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투자 유치한 금액의 3%가 매월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매월 1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③ 직접 투자 금액이 5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600,000달러에 달하면 팀매니

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 수익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매니저가 없을 경우 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점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1%를 지점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 ④ 직접 투자 금액이 10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1,000,000달러에 달하면 총괄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 수익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팀매니저가 없을 경우 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7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사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2%를 지사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투자자, 매니저, 팀매니저, 총괄매니저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춘 다음 직접 투자한 금액 또는 투자유치금에 따라 투자유치금의 6개월 간 30% 내지 60%를 투자수익금, 직접소개비용, 후원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AH,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및 매월 5%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위를 통해 총 102회에 걸쳐 4,742,597,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한편 AC은 위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8. 5. 8.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8. 12. 31.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4) 원고들은 2019. 3. 6. AC 및 AC의 배우자인 AK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033호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AC의 불법행위책임 및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어 2020. 10. 21. 피고 AC은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목록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다(현재 부산고등법원 2020나57656호로 항소심 진행중이다).

나. AC의 처분행위

AC은 2018. 10. 30.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 10. 31. 접수 제25946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AC의 무자력

AC은 배우자인 AK과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A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인 2018. 1.경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AC이 2018. 5. 8.경 일부 원고들에게 투자금 변제 약정을 함으로써 약정금 채권 또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AC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C이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AC에게 2018. 10. 29. 900만 원, 2018. 10. 3. 900만 원, 2018. 11. 12. 1억 8,200만 원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 AC은 2018. 12.경 위 돈으로 원고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는바, 결국 AC이 기존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변제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가 위 법리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언니인 AK이 제공한 2억 원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AC에게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과연 실제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A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앞서 본 위 2억 원의 출처 및 AC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다수의 형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A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A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영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50.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 66089.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66089.8분의 69.94

(피고 지분전부)

손해배상액 목록

순번	성명	청구금액	인용금액	제1지급금액 (= 이 사건 약정금 × 30% - 일부 변제금)	제2지급금액 (= 이 사건 약정금 × 30%)	제3지급금액 (= 이 사건 약정금 × 40% - 배당 금)
1	A	265,280,000	201,280,000	54,720,000	90,240,000	56,320,000
2	B	50,710,000	42,460,000	9,970,000	17,460,000	15,030,000
3	C	76,150,000	58,650,000	15,600,000	25,950,000	17,100,000
4	D	122,600,000	85,100,000	26,280,000	41,280,000	17,540,000
5	E	50,700,000	41,700,000	10,065,000	17,415,000	14,220,000
6	F	50,710,000	41,710,000	10,075,000	17,415,000	14,220,000
7	G	60,900,000	51,900,000	11,865,000	21,015,000	19,020,000
8	H	51,650,000	33,370,000	-	-	-
9	I	55,400,000	14,640,000	-	-	-
10	J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1	K	10,800,000	10,8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12	L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3	M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4	N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5	O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6	P	45,900,000	45,900,000	8,100,000	16,200,000	21,600,000
17	AA	5,400,000	5,4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18	Q	10,800,000	10,8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19	R	5,400,000	5,4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20	S	10,800,000	10,8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21	T	40,800,000	40,800,000	7,200,000	14,400,000	19,200,000
22	U	5,400,000	5,4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23	V	10,800,000	10,8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24	W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25	X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26	Y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27	Z	21,600,000	21,6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끝.

